

공 고

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-033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31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(이의제기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조*형 등 5명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5. 납부기한 : 2020. 05. 15.(금)

6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- 건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 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 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행정처분 대상자

| 번호 | 대상자 | 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 | 고지주소 | 법령 위반사항 | 과태료 금액(원) | 스팸URL 전화번호 | 광고 내용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조*형 | 680118-1***** | 경기도 수원시 |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| 3,750,000 | 16**-8888 | 대리운전 |
| 2 | (주)하*엠소프트 | 1101111-9***** | 서울시 강동구 |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 | 3,750,000 | 010**-19-3692 | 주식 |

| 번호 | 대상자 | 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 | 고지주소 | 법령 위반사항 | 과태료 금액(원) | 스팸URL 전화번호 | 광고 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3 | 최*형 | 901025-1***** | 서울시 금천구 |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 | 3,750,000 | 010**-15-1025 | 홍보대행 |
| 4 | 박*혜 | 6812121-2***** | 경기도 고양시 |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 | 7,500,000 | 02**-32-5204 | 휴대폰가입 |
| 5 | 주식회사 에*치얼컴퍼니 | 131111-0***** | 경기도 성남시 |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 | 7,500,000 | 010**-56-1081 | 주식 |